http://dx.doi.org/10.5392/JKCA.2013.13.11.690

청소년 인터넷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주요국의 청소년 인터넷규제를 중심으로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Youth Internet Regulation: Focusing on Youth Internet Regulation of the Major Country

송은지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Eun-Ji Song(songsary0@gmail.com)

요약

발전된 디지털 환경은 생활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접근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터넷 상의 유해 정보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인터넷 상의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각종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해외 주요 국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환경 강화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해본다. 주요 국가들은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구조 구축과 캠페인,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며 직접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 조성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 증진과 간접적 규제 기반 조성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청소년 인터넷 규제 | 인터넷 규제 법률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

Abstract

Advanced digital environment, ease of life would bring significant benefits, but rather indiscriminate access to information have occurred new social problems. Especially the youth and children using the Internet to increase in population resulting from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oncerns about the negative impact increases establish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youth and childre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various activities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major countries aim to self-regulation minimize the direct regula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cultivation and campaign, continuing education, Korea was analyzed that implement direct and coercive enforcement regulations such as 'internet game shut down' and insufficient social infrastructure to create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positive internet environment, self-regulation is essential with private experts and organizations based on cooperation and indirect regulation

■ keyword : | Youth Internet Regulation | Internet Regulation Laws | Internet Access of Youth |

* 본 연구는 2011년도 중앙대학교 성적우수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접수일자 : 2013년 08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9월 23일
수정일자 : 2013년 08월 26일 교신저자 : 송은지, e-mail : songsary0@gmail.com

I. 서 론

인터넷의 보급 확대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은 활용 방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창의성 발달의 도구이자 새롭고 폭넓은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우려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2년 “국내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야기되는 사회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53.0%), 악성댓글(52.5%), 욕설 및 비속어의 남용(40.4%), 개인 신상 정보의 오남용(39.5%) 등을 꼽았으며, 유해 콘텐츠(음란물 등) 확산(18.6%)이나 인터넷 마녀사냥(18.3%)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드러내고 있었다. 더욱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적고 위험 요인에 대한 인지력도 낮아 유해 정보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무분별한 정보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성인보다 더욱 큰 악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게임에 대한 연구인 김현수(2012), 조민자(2012)와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성의식에 관한 양소정(2010), 김유정(2010) 연구 또한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범죄에 대한 김계원(2012), 남재성(2011)의 연구도 나타난다. 온라인상의 대표적 청소년 규제인 ‘셧다운제’도 최성락(2013), 박종현(2011) 등의 선행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구체적인 주제에 한정되어있는 경향이 있어, 본고에서는 인터넷 상 위험 요소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을 포괄적 관점으로 접근하려 한다. 먼저 해외 주요국들에서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 및 인터넷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국내 인터넷 규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국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1. 인터넷 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통틀어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으로 보고 인터넷 상 유해 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방송통신위원회)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 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제41조)’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국가 기관의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보호를 위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제31조 1항), 사이트 운영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된다(제23조 1항). 또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공개적으로 사실인 내용 또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제 70조 1항, 2항), 청소년 보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1].

2. 인터넷 규제 정책 운영 구조 및 현황

국내 인터넷 서비스 내용에 관한 심의 및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영상, 게임, 음악, 출판물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되고 있는 일부 콘텐츠들의 경우에는 영상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과 같

이 각 담당 매체물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며, 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한다. 또한,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책의 기준 수립과 운영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고 지나치게 많은 부처에 일임되어 있어 일관되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인터넷 이용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 국민 대상의 캠페인 활동이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 제공사 측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라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셧다운제도는 청소년 인터넷 이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1년 5월 제정되어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돌입했다.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 업체가 연령과 본인 인증 등의 개인정보를 통해 해당 시간대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모든 게임은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게임 내 이용료가 부과될 시에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셧다운제를 도입한 측에서는 청소년의 수면권이나 건강권을 이유로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청소년의 즐길 권리나 실효성, 가정의 청소년 지도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왔다[2].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은 타당해보이나 효과의 면에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야간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게임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주간에 과도하게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 외에 다른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다[3]. 이러한 점에서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동시에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Ⅲ. 외국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3.1 미국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미국은 직접적인 사업자 처벌이나 콘텐츠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됨에 따라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IT에 대한 활용도나 보급률이 높고 사업자 및 사업 모델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 제한, 콘텐츠 규제, 프라이버시 규제 등 인터넷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참여나 환경 정비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면책 도구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70년대부터 청소년에 대한 음란 및 유해정보에 대한 연방법을 제정해 왔으며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인터넷 상의 유해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을 공식 제정하였다. 동 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저속물, 노골적인 혐오물, 음란물을 고의로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4]. 통신품위법 위반 시에는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인인증번호 사용 등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5].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외설물 거래 및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아동 외설물과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을 제정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동 법은 1996년 『아동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에서 출발해 『아동 성적약탈 방지법』(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1998)으로 개정되었으나, 2002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2003년에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와 미국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과 같은 기구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및 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34)에 따라 조직된 미국 정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 미국 통신 시장의 규제와 청소년 및 아동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 결정 및 실행이 가능한 구조를 띤다.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2001년부터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에 따라 공립학교 및 도서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차단이나 필터링과 같은 기술보호조치를 적용하는 'E-rate 프로그램'이 있으며, 자금 지원 규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연방통신위원회 외에도 가족 온라인 안전위원회(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무선통신연합회(CTIA-The Wireless Association) 등 주요 민간단체들은 연방통신위원회의 가이드를 기반으로 기술 솔루션 제공, 필터링 도구 지원, 정보제공, 교육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활동은 실용적인 솔루션 제공이나 교육을 통해 청소년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하기보다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하며,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2 영국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정부 주도적 규제보다는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터넷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자율 규제 단체의 협력 구조가 매우 탄탄하다는 점이 특징이다[6]. 다만 영국은 인터넷 상 청소년 보호에 특화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게임 등 일부 콘텐츠의 경우 법 규제의 적용 범위가 뉴미디어의 영역까지 미치지 않아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해 정보 및 콘텐츠 규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방법에서도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모두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자율 규제를 담당하는 민간단체 가운데 일부는 정부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핫라인이나 아동 신고 센터와 같은 긴급 신고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기민한 대처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영상 및 콘텐츠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비디오 레코딩법』(Video Recordings Act 1984)에 따라 영국 영화 분류국(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에서 콘텐츠 등급제를 실시한다. 인터넷 상의 영상 콘텐츠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제에 따를 의무가 없으나 업계에서는 인터넷 방송 영상용 등급 분류 서비스 'BBFC 온라인'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비디오 레코딩법』에서는 성적 묘사나 폭력성이 강한 게임 콘텐츠에 대한 연령 등급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동 성추행법』(Indecency with Children Act 1960)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성적 목적으로 접촉하는 일명 '아동 그루밍(Child Grooming)'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및 음란물 콘텐츠 제작은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을 비롯해 『시민정부법』(Civic Government act 1982),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경찰 및 형사법』(Police and Justice Act 2006), 『범죄 처벌 및 이민법』(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은 인터넷 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관련 행위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모두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7].

영국 정부는 인터넷 상 청소년 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 조직으로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산하에 영국 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를 운영하고 있다. 동 조직은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협의하고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지도 계획을 고안하여 추진하는데 주력하며,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검열 및 제재는 수행 역할에서 제외된다. 영국 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는 애플,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페이스북, 보다폰 등의 대표적

인 글로벌 ICT 사업자들을 비롯해, 법 집행 기관, 학술 연구 단체, 자선단체 등 170개 이상의 민간 조직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은 자율 규제 연합체인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을 조직하고 사법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 감시 재단은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 『성범죄법』 및 『아동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긴급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아동 성적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 방지 단체(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Children) 등의 단체도 운영함으로써 정부에도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공사부문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3.3 독일

독일 역시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영국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자율 규제 체계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콘텐츠 범위나 처벌 범위 등을 정의해 법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며, 민간단체를 통해 이러한 법 규정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도록 하고 있다[8]. 인터넷 규제 권한은 연방정부보다는 주 정부에 집중하고 있으며, 콘텐츠 등급제 등의 제도적 기준 역시 법적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7년 독일 연방 형법에서는 인터넷 상 유해 콘텐츠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에 오프라인 상의 물리적 문서에 국한되어 있던 규제 대상 매체가 인터넷 및 온라인 상 전자 문서와 데이터로까지 확대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음란물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일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형법 제 184조)이나 폭력 행위 및 수간 행위 묘사물(형법 제 184a조)에 대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 윤리를 해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실제 성적 학대 및 추행 행위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비강제적인 음란 행위 묘사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를 배포하거나 구매 및 소유하는 행위,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형법 제183b, c, d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특화된 유해 콘텐츠 규제법으로는 2002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과 『텔레미디어주간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은 크게 각 주의 미디어감독청(Die Landesmedienanstalten, DLM),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KJM),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청(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 BPjM)으로 구성된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은 앞서 언급한 청소년보호법 및 텔레미디어 주간 협약에 따르고 있어 혼란을 방지한다[9].

연방심사청은 청소년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미디어 및 텔레미디어를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해매체 목록 등재 결정은 각 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텔레미디어의 경우에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우선한다.

주 미디어감독청은 콘텐츠 제공사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텔레미디어 주간협약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데, 텔레미디어 주간협약의 조항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한 직속 기관으로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텔레미디어 주간협약에서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는 경우에 한해 텔레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간 자율규제기구 조직과 자율규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 인터넷 규제 정책의 성격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에 기반을 두나 정부의 감시 및 관리가 비교적 강력한 형태의 자율 규제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행 규범을 마련하고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실행 규범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시 및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미권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3.4 일본

일본은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관련 법령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제 및 처벌은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초점은 국가, 사업자, 보호자 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환경 정비를 위한 도구 적용 및 교육 홍보에 맞춰져 있다. 민간단체 역시 감시・감독의 역할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환경 정비 도구 제공을 통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무 준수를 촉구함으로써 처벌에 따른 규제는 최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 훈련에 대한 홍보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일본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법령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關する法律)이 2008년 6월에 제정되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활동 추진 노력을 강조하고(제13조~16조),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및 통신 사업자들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모바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시 보호자가 이용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유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 의무가 주어지며(제17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역시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18조). 서버 관리자는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과 외부로부터의 신고 접수 체제의 정비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다(제21조~22조). 아울러 필터링 기능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단체는 총무성이나 경제산업성에 등록 승인을 받아 활동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주로 필터링 소프트웨어 관련 조사 연구와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홍보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제24조~29조)[10].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역할은 민간단체 및 사업자들에 대한 지적・재정적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어(제30조) 정부의 법적 권한이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제도적 지원 환경 마련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내각부는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인터넷 청소년 유해 정보 대책 및 환경 추진을 위한 각료 회의'를 조직해 운영해오고 있다. 회의에서는 법률상에 명시된 세 가지 기본 이념을 기반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사용 정책의 기본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 및 결정한다[11]. 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되는 네 가지 기본 계획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 능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계몽 활동 추진,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관리에 관한 교육 활동 실시, 청소년 유해정보 접근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 촉진, 인터넷 상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국민의 자주적 대응 등이다.

내각부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육성 지원 추진 본부를 중심으로 총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관련 행정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산하 공공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학부모, 사업자 및 민간단체 간 협력 체제 정비 노력도 강조되고 있다.

Ⅳ. 인터넷규제 개선방향 제언

특정한 위험 요소 및 유해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따라서 인터넷 규제 정책은 각 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특히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에는 IT 기술의 보급 및 활용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인터넷 위험 요소에 대한 법 규제 상황과 국가 정책의 방향 역시 각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 1]은 각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 수단에 대해서 주요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규제강도가 강하며 여러 부처에 걸쳐진 업무로 인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민간과 정부의 협조를 통한 자율적 규제를 지향하는 강점을 보이는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해서도 민간의 활동보다는 정부의 활동이 일방적인 규제가 대부분이

다. 직접적인 규제보다 캠페인이나 홍보, 교육 등의 사회 인프라와 인식 개선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정책인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사업자 및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행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 데 반해,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비율은 40%에 달했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각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 수단

국가	법률	규제강도	가이드라인	민간활동	사회인프라
한국	○	강함	△	△	△
미국	○	약함	○	○	○
영국	X	약함	○	○	○
독일	○	보통	○	○	△
일본	○	보통	○	○	○

그러면 한국의 청소년 인터넷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래 [그림 1]에서 인터넷 규제의 성격을 민간/정부, 자율/타율의 척도를 사용하여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보았다. 본문에서 다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율적이기 보다는 자율에 가까운 A와 B 유형에 속한다.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고 자율 규제를 지향하는 미국과 영국은 A유형, 자율적 규제 방식이나 민간의 활동을 정부가 관리하는 독일은 B유형, 사회 인프라가 강한 일본은 A와 B유형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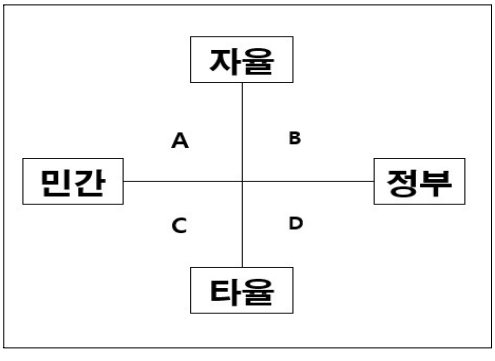

그림 1. 인터넷규제의 성격에 따른 분류

한국은 정부주도의 관리적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D유형에 해당한다. 물론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기인해 현재의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이지만, 주요국들의 인터넷 규제 유형은 한국의 인터넷 규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주요국들의 청소년 인터넷 규제를 살펴보고 한국의 인터넷 규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청소년이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시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이 정비되어 있으나, 여러 정부부처에 걸친 인터넷 콘텐츠 규제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협조 체계 및 사회 인프라 조성 활동도 취약하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처럼 직접적으로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주도의 제도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민간 자율 규제 단체 간에 단단한 협력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사업자, 시민 단체, 연구기관 등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한다.

독일도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자율성의 재량이 크지는 않다. 법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민간단체를 통해서 법규정 준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본도 청소년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처럼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환경 정비와 교육 홍보 등의 사회 인프라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기존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인터넷 상 청소년 보호법 체계를 강화하면서 정부주도의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자 규제 및 콘텐츠 심의 등의 인터넷 정책은 정부 주도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감성지능을 발달시키고 긍정적인 성향을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간구[12]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 주도적 일방적 규제 방식은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큰 효율성을 가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디지털 및 인터넷 환경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과 이용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자율적 규제 제도나 이용자 교육 방식 등을 민간 전문가 및 시민 단체,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신고 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부·산업계·민간 이용자가 모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자율 규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테이블세터(Table setter)로서의 역할[13]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사업자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조성되면,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권익 신장과 사업자의 시장안정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창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과 협력하는 자율적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국의 인터넷 정책에 따른 결과 및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 규제 정책에 따른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나 사이버 범죄율 등의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보다 타당한 연구가 될 것인데 연구 결과마다 용어 정의가 상이해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정책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日本貿易振興機構, *韓國における青少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pp.4-5, 2012.

[2] 블로터넷, 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완화 법안 발의, 2013.2.4.

[3] 박종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p.130, 2011.

[4] 日本貿易振興機構, *米國における青少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p.5, 2012.

[5] 日本貿易振興機構, *米國における青少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pp.6-7, 2012.

[6] 日本貿易振興機構, *英國における青少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p.4, 2012

[7] 미래창조과학부,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책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 p.89, 2011.

[8] 미래창조과학부,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책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 p.111, 2011.

[9] 日本貿易振興機構, *ドイツにおける青少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p.17, 2012.

[10] 總務省, *インターネット上の違法・有害情報への對応に關する檢討會最終取りまとめ(案)*, pp.121-122, 2008.

[11] 內閣府,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に關する基本的な計畫(第2次)*, p.3, 2012.

[12] 이만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감성지능 및 대인관계 성향 차이”,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9권, 제11호, p.209, 2009.

[13]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현황 및 시사점*, p.14, 2009.

저 자 소 개

송 은 지(Eun-Ji Song) 정회원

- 2003년 3월 :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2010년 3월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석사과정 수료
- 2012년 7월 ~ 현재 :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

<관심분야> : 뉴미디어, 문화정책, 영상산업 및 정책